

KR 9600029

KAERI/TR-522/95

기술 보고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통제품목에 대한 미국·일본의 수출허가 요건 분석

1995. 6.

한국 원자력 연구소
대외 정책 연구실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원자력 통제정책 설정 연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통제품목에 대한 미국·일본의 수출허가 요건 분석

1995. 6.

작성자 : 최 영 록

감수자 : 이 한 명

요 약 문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하나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입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SG의 지침 및 통제 품목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 (NSG) 지침을 자국의 제도에 반영하는 방법과 통제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요건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미국은 원자력 수출통제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제도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비확산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미국의 자료에는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 NRC의 10 CFR 110, 에너지부의 10 CFR 810이 있으며, 일본의 자료에는 수출관리령 및 다수의 통달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이 통제하는 NSG 품목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품목에 대해, 허가요건을 목적지, 허가종류, 제출서류 등의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허가요건을 각각의 품목에 대해 비교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구축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미국, 일본의 수출허가 정책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Korea has taken steps to join the Nuclear Suppliers Group (NSG) which is a major part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In this connection, it is an urgent task to build a new Korean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that includes NSG guidelines and control ite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veloped supplier countries' experience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US and Japan have controlled the items listed in NSG Part 1 and 2 guidelines. To this end, various relevant regulations of the US and Japan were studied. Among those regulations, the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US 10 CFR 110 and 810, and the Japan's Export Administration Order are included. Through the review process, this study identified NSG items which are controlled in the export control systems of the U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summarized and compared the export license criteria that must be satisfied before exporting each NSG item in the two countries. The export license criteria consist of permitted destinations, document requirements, and types of licen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appropriate Korean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and could be used as references to the practical export licensing policies of the US and Japan.

목 차

I. 서 론	1
II. 일본의 수출허가요건	2
III.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10
IV. 품목별 허가요건 보는 법	25
V. 미·일의 품목별 허가요건	26
참고문헌	98
부록: 미국 상무부의 국가군 분류	99

I. 서 론

원자력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간의 비공식 모임이다. 따라서 NSG에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NSG 지침을 자국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치적 약속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31개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도의 강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NSG 지침은 시행수단의 언급이 없이 추상적인 통제기준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 수출통제 경험이 없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구체적인 제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내 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분석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논리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통제품목별로 허용되는 허가 종류와 목적지 및 허가종류에 따른 첨부서류의 종류 등 세부적인 제도 시행 내용은 원자력 수출통제의 경험이 없는 한국이 제도 구축과 시행에서 많이 참고해야될 자료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SG Part 1 및 Part 2 전 품목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허가종류, 허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출 가능한 목적지, 각 품목에 대한 기술적 정의, 전략물자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II. 일본의 수출허가요건¹⁾

1. 통제화물의 분류 및 허가대상 지역

표 1. 통제화물의 분류와 허가대상 지역

화 물	수출령별표 제 1항의 번호	통제대상 지역
1. 비확산 관련 1) 무기관계 2) 원자력관계 3) 화학병기관계 4) 생물병기관계 5) 미사일관계	1번항 (1) ~ (16) 2번항 (1) ~ (51) 3번항 (1) 및 (2) 3.2번항 (1) 및 (2) 4번항 (1) ~ (26)	(수출령 제1조 제1항의 허가) 전 지역 전 지역 전 지역 전 지역 전 지역
2. Post-COCOM 관계	5번항 ~ 14번항	(수출령 제1조 제1항의 허가) 특정 지역 (수출령 제1조 제2항의 허가) 특정지역이외의 지역 (수출령 제2조 제1항 제 1호의 승인) 특정지역이외의 지역 (수출령 별표 제3에 있는 지역은 제외)
	15번항 (특정포괄수출 허가 제외품목)	(수출령 제1조 제1항의 허가) 전지역 (수출령별표 제3에 있 는 지역은 제외) (수출령 제1조 제2항의 허가) 수출령별표 제3에 있는 지역

위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원자력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전지역에 대해 수출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세부화물의 규제내용은 수출령별표제1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충분치 않다.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정한 성령 및 통달 (용어의 해석 등), IC/DV를 필요로 하는 기준, 허가

1) 참고자료: 안전보장무역관리관련 화물·기술리스트 및 관계법령집 (1994년)

불필요 특례, 사무의 취급구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허가사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제 4장에 기술하였다.

원자력을 포함한 비확산 통제물자에 대해서는 전지역이 허가대상 지역이지만 Post-COCOM 품목의 수출허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이 3가지로 구별되며 다음과 같다.

○ 특정지역 (4개국) : 주요 수출통제 대상국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 수출령별표제3에 있는 지역 (22개국) : COCOM 가맹국 및 협력국으로 안전한 지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기타지역 : 위 두 지역 이외의 지역

2. 면제금액

일본에서는 소액수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면제금액 따로 설정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 있는 수출의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면제금액은 크게 5만엔까지 허가면제되는 지역과 100만엔까지 허가면제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위에서 언급한 수출령별표제3에 있는 지역 22개 지역에 대해서는 소액수출 대상인 품목인 경우 100만엔까지 허가면제되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만엔까지 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품목은 소액수출에 의한 허가면제에서 제외되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의 수출이라도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3. 해석의 제공

일본에서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해 기술적인 사양, 세부품목, 제외되는 품목 등을 해석란을 두어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수출통제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관계 성령 및 통달 일람표에서 해석란에 표기된 화물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에 관하여'에 의해 해석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해석란에는 좌우 두개의 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좌측란은 상세한 해석 및 세부품목을 제공한 것이고, 우측란은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을 규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공된 해석내용을 품목별로 정리하였다.

4. 전략물자 해당 여부

NSG 품목 중 많은 품목은 COCOM의 원자력 품목과 중복된다. 일본에서는 COCOM에 있는 원자력 품목을 NSG 품목에 포함시켜 하나의 품목군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관계 성령 및 통달 일람표에서 전략물자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 화물은 '전략물자수출허가등 사무처리요령'에 의해 전략물자에 포함된 품목을 표시하는 것이다.

전략물자란에 표기되어 있는 화물은 수출허가 신청에 즈음하여 IC (Import Certificate: 수입증명서)/DV (Delivery Verification: 통관증명서) 또는 TAC (Transit Authorization Certificate: 적체인가서)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NSG 품목에서 COCOM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세부품목을 전략물자 특이사항란에 기술하였다.

5. 일반포괄허가 및 특정포괄허가

5.1. 일반포괄허가

○ 1종 포괄허가

1종 포괄허가는 COCOM 가맹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에 적용되는 포괄허가이다. 이것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영국이 EC 또는 COCOM 가맹국에 대해 제공하는 OGEL (Open General Export License)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미국의 GCT (General License for COCOM Trade)에 해당하는 품목과 유사하다. 또한 일부 비확산 통제 물품은 회원국에 대해 가능하다.

○ 2종 포괄허가

2종 포괄허가는 통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가능하다. 대상 물품은 COCOM의 행정예외 수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5.2. 특정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는 영국의 OIELS (Open Individual Export License) 또는 미국의 유통허가와 유사하다. 이허가는 제한된 수의 수출업자에게만 부여되는데, 그들은 엄격한 내부 수출통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특정 품목이 자유지역에 대해 이 허가로 수출 가능하다. 특정포괄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5.3. 포괄허가에 따른 지역 구분

일본은 포괄허가와 관련하여 전세계를 1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들 지역 구분을 편의상 A에서 M지역으로 표기하였다. 포괄허가가 제공되는 지역 및 포괄허가의 종류는 해당품목의 특성 (예를 들면, 전략물자에 포함여부 또는 품목의 민감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진다. 원자력과 같은 비확산물자인 경우는 2종 일반포괄허가로 수출할 수 없다. 다음의

표 2에 13개의 지역구분이 정리하였다.

표 2. 포괄허가 적용과 관련된 국가 분류

지역구분	국가수	국가명
A	1	미국
B	19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C	1	뉴질랜드
D	2	아르헨티나, 헝가리
E	1	아이슬랜드
F	1	체코
G	4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H	1	러시아
I	1	터어키
J	1	홍콩
K	4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L	12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시, 중국,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두바, 타지키스탄, 트루크베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M	--	--

6. 성분표 또는 화학분석표 제출

일본은 특정 품목에 대해 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 또는 화학분석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은 물질과 같이 외관상으로 전락물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물자로 원자력의 경우, 령별표제1의 2항 (1), (3), (4), (9), (18) ~ (26), (33), (48), (51)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7. 수출허가신청 첨부서류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따라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즉, NSG 회원국인 지역과 비회원국인 지역에 따라 허가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또한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7.1. NSG 회원국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 회원국의 분류

1993년 말의 28개국 회원국은 일본에서 수출허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 서방 20개국 (※표기)
- 러시아 (◎표기)
- 동구 6개국 아르헨티나 (☆표기)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첨부서류 일람

NSG 회원국에 대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의 10가지가 있다. 위의 회원국 분류에 따라 10가지 서류 중 일부가 요구된다.

- ① 수출허가·승인 신청서 (2통)
- ② 수출허가·승인 신청 내용 명세서 (1통)

- ③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통)
- ④ 수출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규정 (복사본) (1통)
- ⑤ IC (수입증명서) (1통)
- ⑥ 화물/기술의 개요 및 특성 (1통)
- ⑦ 파라미터 스위트 등 (1통)
- ⑧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의 기술자료 (1통)
- ⑨ '전략물자·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4의 서류 (1통)
- ⑩ '전략물자·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5의 서약서 (1통)

국가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NSG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수출지역 (회원국인 경우)	제출서류
※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만약 전략물자에 포함되고 총가액이 \$5,000 이상인 경우	① ~ ④의 서류 ⑤의 서류 추가
◎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만약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품목인 경우	① ~ ④의 서류 ⑥ ~ ⑩의 서류 추가
☆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만약 2의 (12), (17)2 품목인 경우	① ~ ④의 서류 ⑥ ~ ⑩의 서류

7.2. NSG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 NSG 회원국 이외 지역의 분류

뉴질랜드, 홍콩, 대한민국, 터키의 4개국 (※표기)

4개국 이외의 지역

○ 첨부서류 일람

NSG 회원국에 대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의 9가지가 있다. 위의 회원국 분류에 따라 9가지 서류 중 일부가 요구된다.

- ① 수출허가·승인 신청서 (2통)
- ② 수출허가·승인 신청 내용 명세서 (1통)
- ③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통)
- ④ 수출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내부규정 (복사본) (1통)
- ⑤ 화물/기술의 개요 및 특성 (1통)
- ⑥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의 기술자료 (1통)
- ⑦ ‘대량과괴병기관련 화물·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3의 서류 (1통)
- ⑧ ‘대량과괴병기관련 화물·기술의 수출관리에 대하여’의 별기 4의 서약서 (원본, 사본) (1통)
- ⑨ IC (수입증명서) (1통)

국가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NSG 회원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수출지역 (회원국 아닌 경우)	제출서류
※표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① ~ ⑧의 서류
만약 전략물자에 포함되고 총가액이 \$5,000 이상인 경우	⑨의 서류 추가
※표기국 이외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① ~ ⑧의 서류

Ⅲ.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1. NSG Part 1 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2)

미국에서는 원자력 전용 품목, 즉 NSG Part 1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 담당하고 있다.

1.1. 지역 분류

NRC에서는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전세계를 3개의 지역, 즉 금지지역, 제한지역,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허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금지지역 (Embargoed destinations) (4개국)³⁾

쿠바, 캄푸치아, 북한, (베트남)

○ 제한지역 (Restricted destinations) (36개국)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앤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버마, 칠레, 코모러스, 지부티, 가이애너,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리비아, 머라위, 모리테니어, 모잠비크,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세인트 키츠, 시리아, 탄자니아, 아랍에미레이트, VANUATU,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특정품목에 대한 일반허가 지역

원자로 부품 중 원자로압력관, 지르코늄 튜브, 원자로 내장재, 원자로 control rod drive mechanism 및 기타 원자로 부품은 다음 국가에 대해 일

2) 참고자료: 10 CFR 110 (1988년)

3) 베트남의 경우, 1994년 2월 embargoed country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NRC의 규정의 금지지역에서도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근의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캐나다, Euratom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1.2. 허가 종류 및 허가대상 품목

NRC에서는 수출허가로 특별허가와 일반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 특별허가의 대상 :통제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 [NSG Part I 품목에 해당]
- 일반허가의 대상: 통제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의 일부 (원자로압력관, 지르코늄 튜브, 원자로 내장재, 원자로 control rod drive mechanism, 기타 원자로 부품)를 위에서 언급한 특정국에 수출하는 경우와 물질등을 소량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 항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1.3. 일반허가 대상 품목

NRC 통제 품목 중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크게 특수핵물질, 선원물질, 부산물, 중수소, 원자력급 흑연,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구분된다.

1.3.1. 특수핵물질의 일반허가

-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① 저농축우라늄 (17.5 part/million)으로 어떠한 품목 또는 물질내의 잔여 물질로 존재하는 것
 - ② 심장보조기의 플루토늄으로 플루토늄-238의 비율이 무게로 80% 이상인 것
 - ③ 정밀기구 등의 센서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핵물질로 각 센서부품에 포함되는 것은 3그램미만의 농축우라늄, 0.1그램이하의 플루토늄,

0.1그램이하의 U-233인 경우로 한정된다.

-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 및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① 선적양이 0.001 유효킬로그램이하인 특수핵물질 (즉, 10그램의 플루토늄, U-233, U-235 또는 1% 농축우라늄의 10킬로그램). 단, 일년에 한 국가에 0.1 유효킬로그램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 ② 연료요소에 있는 특수핵물질로, 특별허가에 의해 수출된 것 중 손상되거나 불량인 미조사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1.3.2. 선원물질의 일반허가

-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① 어떠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또는 토륨으로 질량비로 0.05% 미만으로 농축된 것
 - ② Incandescent gas mantles 또는 합금에 포함되어 있는 토륨으로 농축도 5% 미만인 것
-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 및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① 개별선적 양이 10 킬로그램이하인 우라늄 또는 토륨. 단, 일년에 한 국가에 1,000 킬로그램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 다음의 경우는 NRC 제한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① 개별선적 양이 1 킬로그램이하인 우라늄 또는 토륨. 단, 일년에 한 국가에 100 킬로그램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1.3.3. 부산물의 일반허가

-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 ① 모든 부산물. 단, 트리튬, 폴로늄-210, 넵티늄-237, 아메리슘-241은 제외
 - ② 품목당 10 큐리이하의 분산된 형태 (dispersed form) (즉, luminescent light source, luminescent paint, accelerator target, calibration standards, labeled compounds)의 트리튬. 단, 개별선적당 1,000큐리 또는 일년에 한 국가에 10,000큐리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 ③ 비행기에 장착되는 luminescent safety device에 포함된 트리튬
 - ④ 개별선적 양이 100큐리 이하인 폴로늄-210으로 static elimination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⑤ 개별선적 양이 1그램이하인 넵티늄-237. 단, 일년에 한 국가에 10그램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 다음의 경우는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아메리슘-241을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NRC 제한지역에 선적 당 1큐리 초과 또는 제한지역의 한 국가에 일년에 100큐리 초과 양은 제외된다.
- ① Industrial process control 장비 또는 petroleum exploration 장비에 포함 되어야 하고 장치 당 20큐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② 한 국가에 대해서 일년에 200큐리를 초과할 수 없다.
- NRC 금지지역 또는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선적 양이 100 큐리 이하인 bulk, undispersed 트리튬을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한 국가에 대해 일년에 10,000큐리 초과 양을 수출할 수 없다.

1.3.4. 중수소의 일반허가

- NRC 금지지역 또는 제한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선적 양이 10 킬로그램이하인 중수소 (50킬로그램의 중수)를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일년에 한 국가에 대해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양 (1,000킬로그램의 중수)을 수출할 수 없다.

- NRC 제한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선적 양이 1킬로그램 이하인 중 수소 (5킬로그램의 중수)를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일년에 한 국가에 대해 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양 (25킬로그램의 중수)을 수출할 수 없다.

1.3.5. 원자력급 흑연의 일반허가

-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선적 양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bulk nonfabricate된 원자력급 흑연을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일년에 한 국가에 대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양을 수출할 수 없다.
- NRC 금지지역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fabricate된 비원자력관련 상업용 제품의 원자력급 흑연을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단, 전극 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흑연 전극은 NRC 제한지역에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fabricate된 제품은 최종제조된 형태를 말하며, 단 최종사용을 위해 추가의 작업이 필요한 것은 fabricate된 제품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1.3.6. 원자로 부분품의 일반허가

- 다음의 국가에 대해 원자로 부분품 (원자로압력관, 지르코늄 튜브, 원자로 내장재, 원자로 control rod drive mechanism, 기타 원자로 부품)을 경수로, 중수로 또는 연구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허가로 수출할 수 있다.

캐나다, Euratom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

○ 일반허가는 원자로 부분품을 개별수출하여 완전한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는 경우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는다. 부분품의 개별수출의 합이 완전한 원자로의 수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요구된다.

1.4. 허가 요건

NRC에서 통제하는 품목의 허가요건은 품목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1) 생산 또는 활용시설⁴⁾, 특수핵물질, 선원물질 (source materials)의 평화적 용도의 수출은 다음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① IAEA의 전면안전조치 적용
- ② 핵폭발 장치 및 그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에 사용 금지 보증
- ③ 물리적 방호 보증
- ④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재이전 금지 보증
- ⑤ 재처리 및 형상변경 금지 보증
- ⑥ 협력협정 체결 여부
- ⑦ 국가안보 및 미국 국민의 국민보건 및 안전 고려

(2) 생산 또는 활용시설이 아닌 원자력 장비⁵⁾, 중수 및 원자력급 흑연의 수출은 다음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① 부분안전조치 적용
- ② 핵폭발 장치 및 그러한 장치의 연구개발에 사용 금지 보증
- ③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재이전 금지 보증
- ④ 국가안보 고려

4) 이 항에서 의미하는 생산 또는 활용시설이란 ① 원자로 ② 원자로 압력용기 ③ 일차냉각재용 펌프 ④ 제어봉 ⑤ 원자로 연료교환기를 포함한다.

5) 이 항에서 언급하는 생산 또는 활용시설이 아닌 원자력 장비는 원자로 부품 및 부분품 ((1)항에서 언급한 것 제외)이 단독으로 수출될 때를 의미한다.

(3) 부산물 및 비원자력 사용을 위한 선원물질의 수출은 국가안보를 고려한다.

2. NSG Part 1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⁶⁾

미국에서는 원자력 전용 품목과 관련된 기술, 즉 NSG Part 1 품목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에너지부 (DOE)에서 담당하고 있다.

2.1. DOE의 지역 분류

DOE에서는 특수핵물질과 관련하여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외의 민감원자력 기술 제공, 원자력 전용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를 허가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특수 핵물질의 생산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 (51개국)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앤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바레인, 브라질, 불가리아, 버마, 칠레, 중국, 코모러스, 독립국가연합, 쿠바, 체코, 지부티, 에스토니아, 가이애너,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캄퓨차, 북한, 슬로바키아,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모리테니어, 모나코, 몽고, 모잠비크, 니제르, 오만, 파키스탄, 폴란드, 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시리아, 탄자니아, 아랍에미레이트, VANUATU,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2.2. 허가종류 및 허가 대상 활동

DOE에서는 수출허가로 특별허가와 일반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허

6) 참고자료: 10 CFR 810 (1991년)

가는 DOE의 수출허가절차 없이 수출자의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일반허가 적용 대상 활동

일반허가 적용 대상 활동은 다음의 활동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민감원자력기술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SNT)의 제공은 금지된다. 민감원자력 기술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핵재처리 시설, 중수생산 시설의 설계, 건설, 조립, 운영, 유지에 중요한 정보로 정의된다. 일반허가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중보건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긴급한 방사능 사고의 방지와 처리를 위해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DOE에 사전에 보고하고 DOE의 반대가 없을 경우에 한함)
- 미국과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정을 실행을 위한 행위
- DOE와 협의하에 DOS에 의해 승인된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 IAEA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및 IAEA의 직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함
-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특별허가가 요구되는 활동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핵물질의 생산에 관여하는 행위
- 외국을 위해 민감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 모든 외국에 대해 다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 ① 생산원자로, 선원 또는 특수핵물질의 동위원소 분리 (농축) 시설, 재처리,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는 핵연료의 성형, 또는 중수 생산 시설의 설계
 - ②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자로 및 시설의 건설, 조립, 운전, 유지
 - ③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자로 및 시설에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설

계되거나 준비된 부품의 설계, 건설, 조립, 운전, 또는 유지

- ④ 위에서 언급한 생산원자로 및 생산규모 시설에 사용되는 주요
중요 부품의 설계, 건설, 조립, 운전, 또는 유지
- ⑤ 위의 (1)에서 (4)까지의 활동에 대한 훈련

2.3. 허가요건

DOE에서 통제하는 기술의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제안된 활동이 “민감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포함한다면, 원자력법 127조, 128조 및 미국의 국제적인 공약에 의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해당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여부;
- ② 해당국의 NPT 회원국 또는 Tlatelolco 조약 회원국 여부;
- ③ 해당국의 IAEA 전면안전 조치 협정 발효 여부;
- ④ 만약 해당국이 그러한 협정을 발효하지 않은 경우, 제안된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 ⑤ 제안된 활동에 적용가능한 다른 비확산 통제 또는 조건;
- ⑥ 제안된 활동의 상대적인 중요성;
- ⑦ 다른 원천으로 부터의 유사한 지원 가능성;
- ⑧ 미국의 정치, 경제, 또는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여기에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에 의한 미국의 의무가 포함됨.

3. NSG Part 2 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 7)

3.1. DOC의 지역분류

DOC는 원자력 이중사용 품목 및 기술 (즉, NSG Part 2 품목)의 허가를

7) 참고자료: 15 CFR 768-799 (1994년)

담당하고 있다. DOC에서는 전세계를 7개의 지역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는 수출통제 시행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DOC는 7개의 지역 구분외에도 비확산과 관련하여 민감국리스트를 두어 특정품목의 경우 이들 민감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 7대 국가군

- Q, S, T, V, W, Y, Z으로 구분
- Q, S, W, Y, Z 국가군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국가
- T, V 국가군은 자유세계 국가 (한국은 V국가군에 포함됨)

○ 원자력 관련 민감국

- NRC의 제한지역과 동일

3.2. DOC의 품목 분류

DOC에서는 통제품목에 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ECCN번호는 5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는데 각 숫자와 문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Category Groups: 통제품목의 기능별 범주

(예) **3**A01A

- 1 - Materials
- 2 - Material Processing
- 3 - Electronics
- 4 - Computers
- 5 - Telecommunications and Cryptography
- 6 - Sensors
- 7 - Avionics and Navigation
- 8 - Marine Technology
- 9 - Propulsion System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 0 - Miscellaneous

○ Product Groups: 통제품목의 형태별 분류

(예) 3A01A

A - Equipment, Assemblies and Components

B - Production and Test Equipment

C - Materials

D - Software

E - Technology

○ Type of Control: 통제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가지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예) 3A01A

01 - 19 : COCOM Controlled

20 - 39 : Missile Technology Controls

40 - 59 : Nuclear Non-Proliferation Controls

60 - 79 :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ontrols

80 - 99 : Other Controls

○ Code Letter: 유효수출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결정하며 통제되는 국가를 나타낸다.

(예) 3A01A

A - QSTVWYZ (COCOM Controlled)

B - QSTVWYZ (non-COCOM Controlled)

C - QSTVWYZ (특정국가 제외)

D - QSTVWYZ (캐나다 포함)

E - SZ, 남아공화국, 기타 부가적인 통제지역 리스트

F - SZ, 남아공화국, 기타 특정 통제지역

G - SZ, 남아공화국

H - Z, 남아공화국

I - 없음

NSG Part 2 품목 중에는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 국무부에서 허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의 품목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표 5. 군사적으로 적용가능한 이중사용품목

1.1. Spin-성형 및 flow-성형 공작기계	5.1. Flash 엑스-레이 장비
1.2. "수치제어"장치 공작기계	5.2. 다단계 light 개스 gun/고속 gun
1.3. 치수검사시스템	5.3. 기계식 회전 거울 카메라
1.4. 진공유도용해로	6.1. 뇌관 및 multipoint initiation 시스템
1.5. Isostatic 프레스	6.2. Firing set을 위한 전자부품
1.6. 로봇트 및 end-effectors	6.2.1. 스위치 장치
1.7. 진동시험장비	6.2.2. 축전기
1.8. 용해로, 전자빔, 플라즈마	6.4. 핵무기에 상응하는 고폭발물
3.2. 회전자 및 벨로우즈 장비	7.1. 오실로스코프
3.3. 원심형 다면 균형기계	7.2. 광전증배관
3.5. 주파수 변환기	7.3. 펄스 발생기 (고속)
3.6. 레이저, 레이저 증폭기, 발진기	8.1. 증성자 발생기 시스템
3.6. 레이저, 레이저 증폭기, 발진기	8.2.3. 방사선 경화 TV 카메라
3.7. 질량분석기 및 이온소스	8.4. 트리튬 시설, 공장, 부분품
3.9. 밸브, 마모저항	8.5. 백금축매
3.10.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	8.7.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
3.11. 진공펌프	
3.12. 직류고전력공급기 (100V 이상)	
3.13. 고전압직류전력공급기 (2만V이상)	
3.14. 전자기형 동위원소 분리기	

3.3. 허가의 종류

3.3.1. 일반허가

○ GLV (General License for Limited Value)

- 내용: 소량의 수출
- 대상: T, V 국가 (중국, 이란, 시리아 제외)
- 특징: 1년에 12번까지만 허용

○ GCT (General License for COCOM Trade)

- 내용: COCOM 국가간의 거래
- 대상: COCOM 가맹국 및 협력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한국)
- 특징: 수출하기전에 최종사용자로부터 다음의 수입자 진술서를 확보해야 함. 이 진술서는 12개월까지 유효하다. (우리는 이 COCOM 통제 품목을 수입할 것이며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GCT 가능국가 이외로 선적하지 않을 것이다)

○ GFW (General License for Free World)

- 내용: 자유국가에 대해 수준이 낮은 품목을 거래
- 대상: T, V 국가 (중국, 이란, 시리아 제외)

○ GNSG (General License for NSG Members)

- 내용: NSG Part 2 통제품목을 거래
- 대상: NSG 회원국
- 특징: 통제이유가 MT, NS가 아니면 GNSG 적용. 통제이유가 NS인 품목에 대해서는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3.3.2. 개별유효허가

일반허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한다. 개별유효허가의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신청서인 BXA-622P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유효허가 신청에 있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품목군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의 표 6과 같다.

○ 첨부서류 면제

- 총금액이 \$5,000 이하인 경우

- 최종사용자와 구매자가 외국 정부 또는 정부단체인 경우
- 전시회 등 일시적인 수출의 경우

표 6. 이중사용 품목의 허가신청에 따른 첨부서류

품목	해당 지역	첨부 서류	관련 조항
ECCN의 코드 A 품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Lichtenstein,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IC (정부발급)	775.3
ECCN의 코드 B 품목	상 동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 (BXA-629P)	775.2
ECCN의 코드 A 또는 B 품목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최종사용 증명서 (유고슬라비아 경제부 발급)	775.5
ECCN의 코드 A 품목	중국	중국 최종사용자 증명서	775.6
ECCN의 코드 A 또는 B 품목 + 국가안보 통제	인도	인도수입증명서	775.7
ECCN의 코드 A 품목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수입증명서 (정부발급)	775.8
ECCN의 코드 A, B, C, D, E, F, G, H 품목	국가군 T 이외의 모든 지역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 (BXA-629P)	775.2

○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에는 용도의 한정 및 재수출 사전동의에 대한 서약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제출서류이다. 이 최종사용자/구매자 진술서는 수출허가과 (Office of Export Licensing)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보관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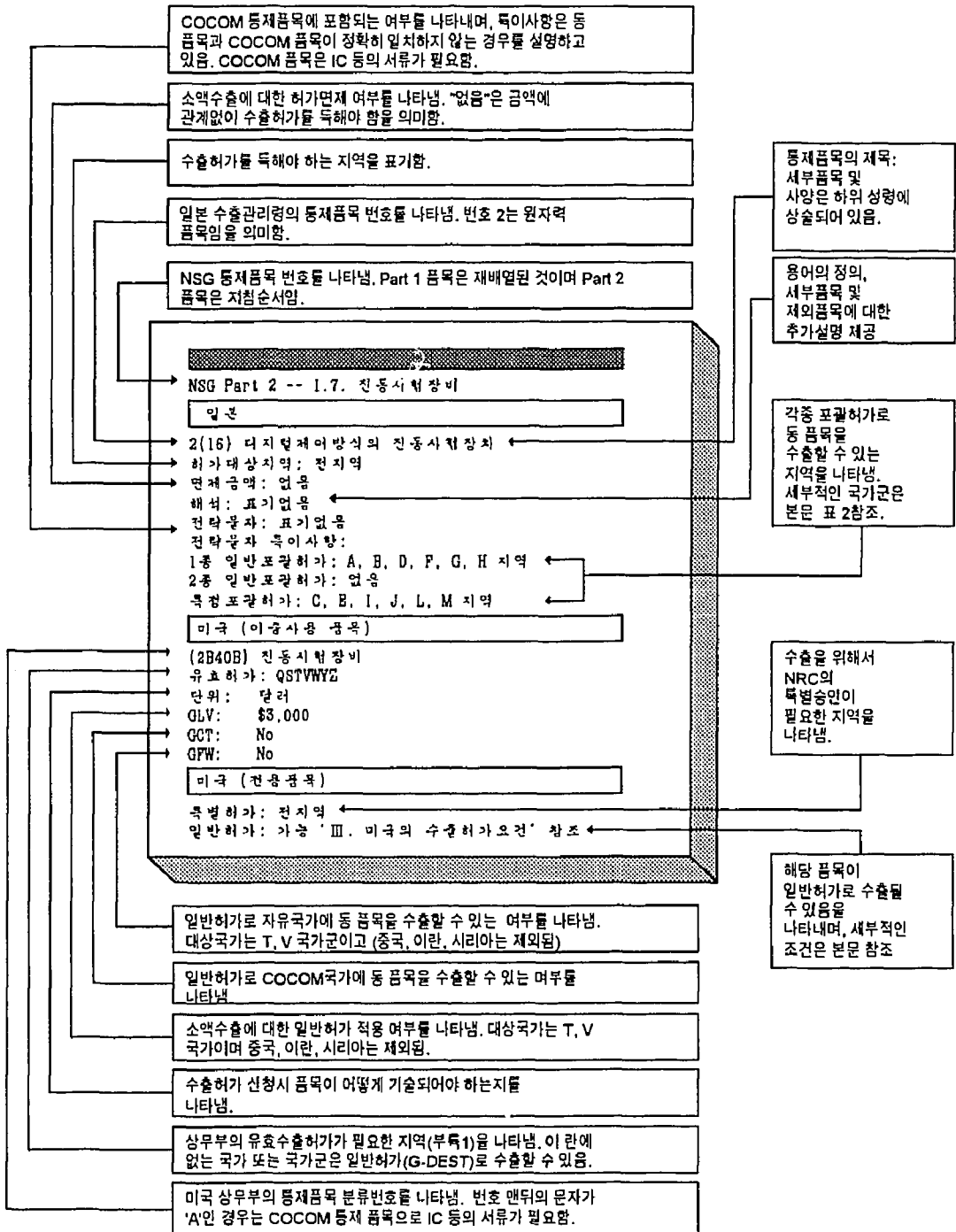
OEL에 제출: 상품이 슈퍼컴이거나 지역이 Q, W, Y, Z인 경우 또는 중국 (BXA-629P가 PRC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대체하는 경우) 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 보관: 지역이 S, V (중국제외)이고 상품이 슈퍼컴이 아닌 경우

3.4. 기타 거래기록의 보관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목적지 통제 진술서 (Destination control statement)를 첨부하여 함께 보관한다.
- 선적자 수출 신고서 (Shipper's Export Declaration): 선적자 수출 신고서는 해당 물품이 어떤 수출허가 (유효수출허가 또는 일반수출허가)에 의해 수출되는지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선적자 수출 신고서에는 품목기술서, ECCN 번호, 허가번호 및 종류, Schedule B number (HS 코드) 등이 포함된다.
- 목적지 통제 진술서 (Destination control statement): 이는 해당 물품이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내며, 기술된 목적지 이외로의 발송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지 통제 진술서는 모든 목적지에 대해 유효허가 및 일반허가 (GLV, GTF-US, G-TEMP, GLR, GFW, GCT)로 수출하는 경우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출자는 Air Waybills 또는 Bills of Lading, Parcel Post Receipts 등의 서류를 확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IV. 품목별 허가요건 보는 법



V. 미·일의 품목별 허가요건

NT100. 선원 및 특수핵분열성물질

NT101. "선원물질" (Source material)

NT102. "특수핵분열성 물질"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일본

2(1) 핵연료 물질, 핵원료 물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핵연료 물질) 중성자속 레벨결정을 위해 방사선 검출측정기에 내장한 것을 포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다음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1) 尖化우라늄으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우라늄 전중량의 0.35퍼센트 미만의 것 또는 차단재용, 바ラスト용 혹은 카운터웨이트용으로 성형한 것 (2) 트리토륨 또는 트리토륨 화합물 (3) 플루토늄 238로 심장 페이스메이커에 넣은 것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가능 'Ⅲ.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참조

NT200.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NT201. 완전한 원자로

NT202. 원자로 압력용기

NT203. 원자로연료의 교환기

NT204. 원자로제어봉

NT205. 원자로압력관

NT206. 지르코늄관

NT207. 1차 냉각재용 펌프

일본

2(2) 원자로, 원자로용 발전장치, 추진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민제금액: 없음

해석: 1. (원자로의 부분품) 다른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 2. (원자로 부속 장치) 다른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 중성자속 레벨결정을 위해 방사선 검출측정기에 내장한 것을 제외

진략물자: 표기

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가능 'Ⅲ.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참조

NT300. 원자로용 비핵물질

NT301. 중수소 및 중수

일본

2(3) 중수소, 중수소화합물, 중수소혼합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중수 및 중수소화된 파라핀, 리튬을 포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가능 'Ⅲ.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참조

NT300. 원자로용 비핵물질

NT302. 원자력급 흑연

일본

2(4) 인조흑연 (원자로용으로 성형된 것)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원자로용으로 성형한 것) 원자로용으로 설계, 제조한 반사재, 감속재 및 연료요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 2. (외관비중) 흑연의 질량을 그 외관용적 (외부에 통하지 않는 구멍을 포함)과 동일한 용적을 가진 온도 4도의 물의 질량으로 나눈값의 것을 말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가능 'Ⅲ. 미국의 수출허가요건' 참조

NT400.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공장 및 특별히 그것을 위해 설계 또는 준비된 설비

NT401. 조사후 핵연료 절단기

NT402. 용해기(Dissolvers)

NT403. 용제(solvent) 추출기 또는 용제추출장비

NT404. 화학적 보유시설 또는 저장조

NT405. 플루토늄 질산염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하는 시스템

NT406. 플루토늄 산화물에서 금속을 생산하는 시스템

일본

2(5) 핵연료물질 분리 재생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분리용 혹은 재생용으로 설계한 장치) a. 조사완료 핵연료물질의 절단기 또는 촛절기 b. 임계안전조 c. 향류용촉매추출장치 또는 이온교환장치 2. (분리용 혹은 재생용에 설계한 장치의 부분품) 조사완료 핵연료 물질 등의 처리과정과 통상의 상태에서 조사완료핵연료 물질 등과 접촉하는 장치, 또는 이를 직접제어하는 장치의 부분품을 포함 3. (제어장치) 조사완료 핵연료 물질 등의 처리의 과정을 직접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 및 조사완료 핵연료 물질 등의 재처리의 모니터 또는 제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제조된 프로세스제어장치를 포함.

전략물질: 표기

전략물질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NT500. 핵연료요소 가공공장

일본

2(6) 이산화우라늄의 제조장치, 리튬동위원소 분리용장치, 핵연료물질의 성형가공용 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핵연료물질의 성형가공용의 장치) a. 핵연료 물질과 접촉하거나 혹은 이를 직접가공하거나 제어하는 장치 b. 핵연료 물질을 피복내에 넣기 위한 봉인 c. 피복 또는 봉인을 검사하는 장치 d. 고체연료의 마무리 가공검사를 위한 장치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 NT600.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 NT601. 가스원심분리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가스원심분리기, 조립체, 그리고 부품
- NT602. 가스원심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준비한 보조시스템, 장비 및 부품
- NT603. 가스확산농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조립체 및 부품
- NT604. 가스확산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준비한 보조시스템, 장비 및 부품
- NT605. 공기역학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장비, 부품
- NT606. 화학적 교환 또는 이온교환 농축공장에 사용될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장비 그리고 부속품
- NT607. 레이저 기반 농축시설들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설비, 부품
- NT608. 플라즈마 분리 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장비 그리고 구성요소
- NT609. 전자기 농축공장에 사용되는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장비 그리고 부속품

일본

2(7) 6불화우라늄제조장치,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용 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용 장치의 부속장치) a.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관상의 열교환기 b.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압축기 또는 송풍기 2.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용 장치의 부분품) a. 가스확산벽 b. 가스확산통 c. 원심분리기의 로터로 6불화우라늄에 대해 내식성이 있는 것 d. 제트노즐 분리 유니트 e. 와류 분리 유니트 f. 화학교환 분리 유니트 (우라늄농축용 이온교환수지 포함) g.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압축기 또는 송풍기 3. (화학교환법) a. 이온교환법 b. 용매추출법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NT602. 가스원심농축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준비한 보조시스템, 장비 및 부품
라. 주파수 변환기

일본

2(8) 주파수변환기 [전용품목, 이중사용 품목]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가스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변환기를 말함 2. (가스원심분리기용의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기의 모타스테이타에의 전력공급용의 것을 말함 3. (주파수변환기) 인버터, 컨버터 또는 발전기능을 가진 주파수변환기 포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가스원심분리기용의 주파수변환기 또는 그 부분품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 NT700. 중수, 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 NT701. 물 - 황화수소 교환탑
- NT702. 송풍기 및 압축기
- NT703. 암모니아 - 수소 교환탑
- NT704. 탑 내장재 및 스테이지 (stage) 펌프
- NT705. 암모니아 크래커 (Ammonia Crackers)
- NT706. 직외선흡수분석기
- NT707. 촉매작용버너 (Catalytic Burners)

일본

- 2(10)(가) 중수소, 중수소화합물의 제조장치 [진용품목, 이중사용품목]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중수소 혹은 중수소화합물의 제조용의 장치 또는 그 부분품 혹은 부속품에 한함 (2(10)(가) 품목을 의미)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주) 2(10)(나)품목은 포괄허가 가능. NSG Part 2 -- 4. 중수생산공장관련 장비 부분 참조

미국

-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 NT800. 우라늄 변환 공장 및 이에 따라 특별히 설계된 기기로 다음의 것
- NT801. 우라늄 광석을 UO_3 로 농축시키는 변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2. UO_3 에서 육불화우라늄(UF_6)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3. UO_3 를 UO_2 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4. UO_2 를 사불화우라늄(UF_4)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5. 사불화우라늄(UF_4)을 육불화우라늄(UF_6)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6. 사불화우라늄(UF_4)을 우라늄금속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7. 육불화우라늄(UF_6)을 UO_2 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 NT808. 육불화우라늄(UF_6)을 사불화우라늄(UF_4)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시스템

일본

2(7) 6불화우라늄제조장치,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용 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용 장치의 부속장치) a.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관상의 열교환기 b.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압축기 또는 송풍기 2.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용 장치의 부분품) a. 가스확산벽 b. 가스확산통 c. 원심분리기의 로터로 6불화우라늄에 대해 내식성이 있는 것 d. 제트노즐 분리 유니트 e. 와류 분리 유니트 f. 화학교환 분리 유니트 (우라늄농축용 이온교환수지 포함) g. 알루미늄, 니켈, 또는 60% 이상의 니켈을 함유한 합금으로 제조한 압축기 또는 송풍기 3. (화학교환법) a. 이온교환법 b. 용매추출법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특별허가: 전지역

일반허가: 전지역 불가

NSG Part 2 -- 1.1 Spin-성형 및 flow-성형 공작기계

일본

2(11) 앞당김스피닝가공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앞당김스피닝가공기) 교직스핀닝가공기 및 앞당김스핀닝가공의 양방의 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B50B) Spin-성형 및 flow-성형 공작기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의 경우 달러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1.2. "수치제어"장치 공작기계

일본

2(12) 수치제어용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 [측정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2(12)는 공작기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상세설명 부분이 있음. 이를 생략 2. (수치제어를 행함이 가능한 공작기계) 경면마무리용공작기계를 포함 3. (전자제어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 전자제어장치를 실장하지 않은 수치제어공작기계를 포함 4. (전자제어장치) 전자장치로 공작기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제어기능과 조합하므로써 윤곽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포함 5. (회전축) 360도 (1회전) 이상 회전하지 않는 회전축을 포함. 지그그라인더에 있어 연삭용 돌을 가공물의 표면에 대해 직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C축을 제외. 6. (직선상의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검출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레이저시스템 또는 적외선시스템을 사용한 피드백장치를 포함한다. 7. (각도를 검출한 위치검출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레이저시스템 또는 적외선시스템을 사용한 피드백장치를 포함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2항 (12) 3에 제기된 화물의 부분품을 제외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L, M 지역

미국

(2B01A) "Numerical control" units, "motion control boards"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의 경우 달라

GLV: \$5,000: 2B01A.a (Numerical control units) 및 c (Machine tools)

\$0: 2B01A.b (motion control boards)

GCT: Yes

GFW: No

(2B41E) 2B01A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numerically controled machine tools

유효허가: SZ, 대만, 원자력민감국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의 경우 달라

GLV: \$5,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1.3. 치수검사시스템

일본

2(12) 수치제어용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 [측정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2(12)는 공작기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상세설명 부분이 있음. 이를 생략 2. (수치제어를 행함이 가능한 공작기계) 경면마무리용공작기계를 포함 3. (전자제어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 전자제어장치를 실장하지 않은 수치제어공작기계를 포함 4. (전자제어장치) 전자장치로 공작기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제어기능과 조합하므로써 윤곽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포함 5. (회전축) 360도 (1회전) 이상 회전하지 않는 회전축을 포함. 지그그라인더에 있어 연삭용 돌을 가공물의 표면에 대해 직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C축을 제외. 6. (직선상의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검출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레이저시스템 또는 적외선시스템을 사용한 피드백장치를 포함한다. 7. (각도를 검출한 위치검출기를 가진 피드백 장치) 유도형 장치, 눈금스케일, 레이저시스템 또는 적외선시스템을 사용한 피드백장치를 포함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영별표제1의 2항 (12) 3에 계기된 화물의 부분품을 제외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L, M 지역

미국

(2B46B) Dimensional inspection system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의 경우 달리

GLV: \$5,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1.4. 진공유도용헤로

일본

2(13) 유도로, 아크로, 플리즈마, 전자빔을 이용한 용해로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1B50B) Vacuum or controlled environment furnaces, including arc, induction, plasma, or electron beam (1,100도씨 이상)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주) 1B50은 반도체 제조 및 처리를 위해 설계된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NSG Part 2 – 1.5. Isostatic 프레스

일본

2(14) 아이소스태틱프레스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아이소스태틱프레스) 기체, 액체, 고체입자 등 각종 매체를 넣어서 밀폐된 중공용기내를 가압하고 가공물 또는 재료에 용기내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같은 압력을 더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중공실) 사용온도 및 사용압력의 달성가능한 용기 (부착용구의 부분을 제외) 를 말한다. 중공실의 내경은 압력용기의 내경 또는 절연로의 내경의 어느것 중 작은 쪽이 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1의 6항 (7)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이 품목이 한차원 높은 수준의 제품임)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2B24B) "Isostatic presses" (10,000 psi 또는 69 MPa 이상; 내경 152mm 초과)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1,500

GCT: No

GFW: No

(주) MT 통제가 적용되는 기술사양 추가설명

(2B04A) Hot "Isostatic presses" (207 Mpa 초과; 1,500도씨 초과; 내경 406mm 이상)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과 부속물은 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Group W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 No

NSG Part 2 -- 1.6. 로봇 및 end-effectors

일본

2(15) 로봇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로봇) 매니퓰레이터기구로 CP제어 또는 PTP제어의 어느것에 의한 것 중 (센서를 가진 것을 포함)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 a. 다기능 b. 삼차원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여 재료, 부품, 공구 또는 특별장치의 위치결정 또는 방법결정이 가능할 것 c. 탈립루프 또는 열림루프의 서브장치 (스택핑모터를 넣은 것을 포함) 를 3이상 가질 것 d. 교시 혹은 플레이백 방법에 의해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컨트롤러로서 이용되는 전자제산기에 의해 기계적 조작없이 이용자에 의해 프로그램의 변환이 가능한 기능을 가질 것 2. (로봇) 직각좌표 매뉴플레이터시스템으로서 정의되어진 스타카쿨렌으로 저장장소 수직한 배열과 일체의 것으로서 제조되어 저장 또는 뽑아내기 위해 저장장소의 중심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을 제외 3. (조정로봇) 매뉴플레이션기구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만 제어가능한 것을 말한다. 4. (시퀀스로봇) a. 고정시퀀스매뉴플레이션기구 b. 기계적으로 제어된 가변시퀀스매뉴플레이션기구 c. 비서브제어의 가변시퀀스매뉴플레이션기구 5. (엔드액터) 로봇의 매뉴플레이터단의 베이스플레이트에 부착된 그리퍼, 능동트렁유니트 및 기타의 트렁을 포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2B07A) 로봇, 특별히 설계된 제어기, end-effectors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5,000

GCT: Yes

GFW: No

(주) NP 통제는 COCOM가맹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NSG Part 2 -- 1.7. 진동시험장비

일본

2(16) 디지털제어방식의 진동시험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B40B) 진동시험장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1.8. 용해로-아크용해, 전자빔, 그리고 플라즈마

일본

2(13) 유도로, 아크로, 플리즈마, 전자빔을 이용한 용해로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1B50B) Vacuum or controlled environment furnaces, including arc, induction, plasma,
or electron beam (1,100도씨 이상)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5,000

GCT: No

GFW: No

(주) 1B50은 반도체 제조 및 처리를 위해 설계된 것은 통제하지 않는다.

NSG Part 2 - 2.1. 알루미늄, 고강도

일본

2(17) 알루미늄 합금, 섬유, 말레질강, 티탄합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로터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재료를 말한다. 2. (인장강도가 46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기술자료 등에 의해 당해화물의 열처리를 행한 경우에 인장강도가 46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경이 75밀리미터를 넘는 봉) 외경이 75밀리미터를 넘는 원통형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외경에 비해 길이가 긴 것을 말한다. 4. (비탄성률)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온도 및 50%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상대습도에서 측정된 뉴턴매평방미터로 표시된 양률을 뉴턴매입방미터로 표시된 비중으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5. (비강도)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의 온도 및 50%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상대습도에서 측정된 뉴턴매평방미터로 표시된 최대인장강도를 뉴턴매입방미터로 표시된 비중량으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6. (인장강도가 205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기술자료 등에 의해 당해화물의 열처리를 행한 경우에 인장강도가 2.0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치의 최대치) 가능한 모든 방향에 관하여 당해화물의 길이를 측정하여 그 중의 최대치를 말한다. 8. (인장강도가 90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기술자료 등에 의해 당해화물의 열처리를 행한 경우에 인장강도가 90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5항 (6) 또는 (18)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주) 포괄허가가 허용되는 품목은 2(17) 품목 중 일부. 제외되는 품목은 (일어해석요망. page 576에 있음)

미국

(IC02A) Metal alloys ... [d. Aluminum alloys; 415 MPa 이상, 25도씨]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Yes

GFW: No

(주) 통제사유: NS

NSG Part 2 -- 2.2. 베릴륨

일본

2(18) 베릴륨, 베릴륨합금, 베릴륨화합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베릴륨의 일차제품) X선기기용의 금속창을 제외 2. (地金) 가루상태의 것 및 스폰지 상태의 것을 포함 3. (반제품) 지금, 합금지금 또는 부스러기를 원료로서 가공한 것으로 슬라브, 뷰렛, 기타 일차제품에 달하지 않는 것을 말함 4. (화합물) 화합물의 부스러기를 포함 5. (일차제품) 압연, 뽑아내기, 압출, 주조, 단조, 분말冶金,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板, 帶, 棒, 素管, 管, 선재, 선, 원반, 粒, 粉, 型材, 주조품, 단조품 및 분말冶金제품을 말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IC19A) Items 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d. Beryllium]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1,500

GCT: No

GFW: No

(주) X-ray 기기 사용 등 예외품목 인정

NSG Part 2 - 2.3. 비스무트 (고순도)

일본

2(19) 핵병기 기폭용 알파선원이 되는 물질등 [비스무트, 라듐 226,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넵튬, 아메리슘, 윌리엄, 카리홀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 혹은 혼합물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1B) 비스무트 (고순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1,500

GCT: No

GFW: No

(주) 1년에 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NSG Part 2 -- 2.4. 보론 (붕소: 10가 동위원소(boron-10)에서 농축한 것)

일본

2(20) 붕소10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7B) 보론 (붕소: 10가 동위원소(boron-10)에서 농축한 것)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2.5. 칼슘 (고순도)

일본

2(21)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산화제 [칼슘, 3불화염소, 마그네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2B) 칼슘 (고순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0

GCT: No

GFW: No

NSG Part 2 -- 2.6. Chlorine trifluoride (삼불화염소)

일본

2(21)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산화제 [칼슘, 3불화염소, 마그네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민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6B) Chlorine trifluoride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No

(주) 5킬로그램 미만의 선직은 제외

NSG Part 2 -- 2.7. liquid actinide 금속에 견디는 물질로 만들어진 도가니

일본

2(22) 액터니드내식성로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니오브, 티탄, 텅스텐의 합금) 니오브 50%, 티탄 30% 및 텅스텐 20%로부
터 된 것을 말함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A44B) liquid actinide 금속에 견디는 물질로 만들어진 도가니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리

GLV: \$0

GCT: No

GFW: No

(주) 5킬로그램 미만의 선적은 제외

NSG Part 2 -- 2.8. 섬유 및 필라멘트류 물질

일본

2(17) 알미늄 합금, 섬유, 말레질강, 티탄합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2(17) 해석의 특이사항 참조] 1.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상세설명) 2. (인장강도가 46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3. (외경이 75밀리미터를 넘는 봉) (상세설명) 4. (비탄성률) (상세설명) 5. (비강도) (상세설명) 6. (인장강도가 205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7. (수치의 최대치) (상세설명) 8. (인장강도가 90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5항 (6) 또는 (18)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주) 포괄허가가 허용되는 품목은 2(17) 품목 중 일부. 제외되는 품목은 (일어해석 요망. page 576에 있음)

미국

(1C10A) 섬유 및 필라멘트류 물질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1,500

GCT: Yes

GFW: No

(주) COCOM 가맹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 NP 통제를 적용

(주) 1C10A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품목은 1C50E에 의해 NP 통제

(1C50E) 복합구조물

유효허가: SZ, 원자력민감국, 대만

단위: 킬로그램

GLV: \$1,500

GCT: No

GFW: No

NSG Part 2 - 2.9. 하프늄

일본

2(23) 하프늄, 하프늄합금, 하프늄화합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19A) Items 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f. Hafnium]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No

(주) 1 킬로그램 미만의 선적은 제외

NSG Part 2 -- 2.10. 리튬 (6가 동위원소(lithium-6)에서 농축한 것)

일본

2(24) 리튬, 리튬합금, 리튬화합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19A) Items 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c. Lithium]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500

GCT: No

GFW: No

(주) Lithium enriched in the 6 isotope incorporated in thermoluminescent dosimeters인 것은 제외

NSG Part 2 -- 2.11. 마그네슘 (고순도)

일본

2(21)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산화제 [칼슘, 3불화염소, 마그네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3B) 마그네슘 (고순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0

GCT: No

GFW: No

NSG Part 2 -- 2.12. 마르에이징강, 고강도 (Maraging steel, high-strength)

일본

2(17) 알루미늄 합금, 섬유, 말레질강, 티탄합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2(17) 해석의 특이사항 참조] 1.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상세설명) 2. (인장강도가 46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3. (외경이 75밀리미터를 넘는 봉) (상세설명) 4. (비탄성률) (상세설명) 5. (비강도) (상세설명) 6. (인장강도가 205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7. (수치의 최대치) (상세설명) 8. (인장강도가 90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5항 (6) 또는 (18)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주) 포괄허가가 허용되는 품목은 2(17) 품목 중 일부. 제외되는 품목은 (일어해석 요망. page 576에 있음)

미국

(1A47B) 마르에이징강, 고강도 (Maraging steel, high-strength)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0

GCT: No

GFW: No

(주) 통제사유에 MT 포함. 1A27B 역시 MT에 의해 통제된다.

NSG Part 2 – 2.13. 라듐

일본

2(19) 핵병기 기폭용 알파선원이 되는 물질등 [비스무트, 라듐 226,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넵튬, 아메리슘, 큐리움, 카리홀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 혹은 혼합물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IC54B)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 화합물, 혼합물 (원자번호 3에서 83은 제외)

유효허가: QSTVWYZ

단위: "MC"

GLV: \$500

GCT: No

GFW: No

(편집자주) 라듐은 원자번호 88번임.

NSG Part 2 -- 2.14. 티타늄합금

일본

2(17) 알루미늄 합금, 섬유, 말레질강, 티탄합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2(17) 해석의 특이사항 참조] 1. (로터에 이용되는 구조재료) (상세설명) 2. (인장강도가 46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3. (외경이 75밀리미터를 넘는 봉) (상세설명) 4. (비탄성률) (상세설명) 5. (비강도) (상세설명) 6. (인장강도가 205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7. (수치의 최대치) (상세설명) 8. (인장강도가 900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것) (상세설명)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5항 (6) 또는 (18)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주) 포괄허가가 허용되는 품목은 2(17) 품목 중 일부. 제외되는 품목은 (일어해석 요망. page 576에 있음)

미국

(1A46B) 고강도 티타늄합금으로 만든 실린더형 튜브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S0

GCT: No

GFW: No

NSG Part 2 - 2.15. 텅스텐

일본

2(25) 텅스텐, 텅스텐탄화물, 텅스텐합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5항 (8)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A50E) 텅스텐, 텅스텐 carbide, 텅스텐 합금으로 만든 부품

유효허가: SZ, 핵민감국

단위: 킬로그램

GLV: \$500

GCT: No

GFW: No

(주) Weights 또는 감마선 collimator로 사용되는 부품은 통제 제외

NSG Part 2 -- 2.16. 지르코늄

일본

2(26) 질코늄, 질코늄합금, 질코늄화합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19A) 지르코늄 금속, 합금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Yes (해당 조건 있음)

(주) 5kg 이하의 선적은 제외. 또한 두께 0.10mm를 초과하지 않는 foil 또는 strip 형태로 200kg 이하의 선적은 제외.

NSG Part 2 - 2.17 (개정) 니켈분 및 다공성 니켈 금속

일본

2(9) 니켈분, 그것을 사용한 다공질 금속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다공질 금속) 조직전체에 상호간에 연결된 균질한 세공을 가진 금속물질로 되도록 성형하여 소결한 것을 말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민생용의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공질 금속 시트로 1매당 면적이 930평방센티미터 이하의 것을 제외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IC19A) 국제원자력리스트 [b. 니켈분, 다공성 니켈 금속]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500

GCT: No

GFW: Yes (권고주 2 참조)

NSG Part 2 -- 3.1. 불소생산 전해조 (Electrolytic cells for fluorine production)

일본

2(27) 불소제조용의 전해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1B19A) 국제원자력리스트 (b. Electrolytic cells for fluorine production)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3.2. 회전자 및 벨로우즈 장비

일본

2(28) 가스원심분리기의 로터제조용, 조립용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B51B) 원심분리로터조립체 장비 및 bellows-forming mandrels and dies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3.3. 원심형 다면 균형기계

일본

2(29) 원심력식 균형시험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B53B) 원심형 균형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3.4. 필라멘트 와인딩 기계

일본

2(30) 필라멘트와인딩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필라멘트와인딩장치) 복합재료의 재료용의 장치로 섬유를 축에 말아붙이는 장치를 말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5항 (18)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1B01A) 필라멘트 와인딩 기계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5000

GCT: Yes

GFW: No

NSG Part 2 -- 3.5. 주파수 변환기

일본

2(8) 주파수변환기 [진용품목, 이중사용 품목]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가스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변환기를 말함 2. (가스원심분리기용의 주파수변환기) 가스원심분리기의 모터스테이터에의 전력공급용의 것을 말함 3. (주파수변환기) 인버터, 컨버터 또는 발전기능을 가진 주파수변환기 포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가스원심분리기용의 주파수변환기 또는 그 부분품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3A50B) 인버터, 컨버터, 주파수변환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3.6. 레이저, 레이저 증폭기, 발전기

일본

2(31) 가스레이저발전기, 고체레이저발전기, 색소 레이저발전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분리에 이용되는 레이저발전기) 분리에 이용가능한 레이저발전기를 말함.
2. (레이저발전기) 輻射의 유도방출에 의해 광증폭을 이용하여 공간 및 시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광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3. (레이저발전기) 라만레이저발전기의 여기용의 레이저광원으로서 사용되는 것, 레이저 증폭기 및 광주파수변환기를 포함 4. (이산화탄소 레이저발전기) 산업용의 이산화탄소 레이저발전기로 지속파를 출력하는 것 또는 200나노초를 넘는 펄스폭의 펄스를 발전하는 것을 제외 5. (펄스) 지속파에 펄스광이 중첩되는 것을 포함 6. (펄스폭) 광강도로 표시한 펄스파형의 半全輻을 말함. 7. (라만레이저발전기) 라만시프터를 포함 8. (레이저광의 스펙트럼선폭) 레이저 발전 출력을 파장에 관해 스펙트럼 분해하여 얻어지는 발전출력의 스펙트럼 분포에 있어 그 강도가 피크강도의 2분의 1이 되는 초장파장과 최장파장간의 파장폭을 말한다. 9. (펄스여기) 연속여기에 펄스를 중첩시키는 것을 포함 10. (큐스위치) 광공진기중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을 포함 11. (파장가변레이저발전기) (상세설명) 12. (레이저광의 증폭만을 행하는 장치) 발전기와 증폭단을 조합한 레이저발전기의 증폭단을 말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10항 (9)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6A05A) 레이저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달리

GLV: \$3000

GCT: Yes

GFW: Yes (권고주 7, 8의 경우)

(주) NP통제는 모든 국가에 적용. 단, 일부 품목의 경우 COCOM가맹국은 제외.

NSG Part 2 -- 3.7. 질량분석기 및 질량분석기 이온소스

일본

2(32) 질량분석계, 이온원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분석에 이용되는 질량분석계)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질량분석계를 말한다. 2. (분석된 물질의 분자선을 이용하여 이온화함) 분석된 물질을 분자선의 상태로 한 후 이온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마크티니드 또는 그 불화물의 이온화용으로 설계한 이온원) 마크티니드 또는 불화이온화용으로 설계한 마이크로프로리네이션이온원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3A51B) Mass spectrometers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3.8. 압력측정장비, 마모저항

일본

2(33) 6불화우라늄내식성의 압력계, 벨로즈꼭지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IB51E) 압력측정장비, 마모저항

유효허가: SZ, 대만, 핵민감국

단위: 달러

GLV: \$100

GCT: No

GFW: No

(IA51E) Corrosion-resistant sensing element

유효허가: SZ, 대만, 핵민감국

단위: 달러

GLV: \$0

GCT: No

GFW: No

NSG Part 2 -- 3.9. 벨브, 마모저항

일본

2(33) 6불화우라늄내식성의 압력계, 벨로즈꼭지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2A19A) 국제원자력리스트 (c. 벨브)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과 부착물은 달러

GLV: \$0

GCT: No

GFW: No

NSG Part 2 -- 3.10.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

일본

2(34) 솔레노이드코일형초전도전자석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솔레노이드코일형) 도선을 동일축에 걸쳐 균일하게 몇번이고 감은 코일의 형상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내경의 35퍼센트를 반경으로 하는 원) 코일단면인 원의 면적의 50%의 면적을 가진 원으로 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1의 7항 (5)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의료용의 자기공명 이미징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한 것을 제외

미국

(3A01A) 전자장치 및 부품 (e.3.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3000

GCT: Yes

GFW: No

(주) 자기공명의료장치 (MRI)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은 제외.

NSG Part 2 -- 3.11. 진공펌프

일본

2(35) 진공펌프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도달압력) 전폐한 상태의 흡기측에 있어 도달가능한 압력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NSG Part 2 - 3.12. 직류고전력공급기 (100 V 이상)

일본

2(36) 직류전원장치 [직류고전력공급기, 고전압직류전력공급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NSG Part 2 -- 3.13. 고전압직류전력공급기 (20,000 V 이상)

일본

2(36) 직류전원장치 [직류고전력공급기, 고전압직류전력공급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진락물자: 표기없음

진락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NSG Part 2 - 3.14. 전자기형 동위원소 분리기

일본

2(7)(나)(8) 우라늄동위원소분리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2종 일반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특정포괄허가: 전지역 불가

미국

NSG Part 2 -- 4. 중수생산공장관련 장비

- 4.1. 물분리를 위한 특수패킹
- 4.2. 칼슘아미드/액체암모니아를 위한 펌프
- 4.3. 물-황화수소 교환 트레이 기둥
- 4.4. 수소-냉각재 증류기둥
- 4.5. 암모니아 컨버터 또는 합성반응로

일본

2(10)(나) 중수소, 중수소화합물의 제조장치 [전용품목, 이중사용품목]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제조에 사용되는 장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함 2. (중수소화합물의 제조장치) 중수의 제조용 장치 포함 3. (세립킬드강) 오스티나이트 결정립도로 립도번호 5이상의 킬드강을 말함 4. (단면적) 수평방향의 단면적의 최대치를 말함 5. (기체로 액체를 향유적으로 흘러 접촉시키도록 설계된 것) a. 시브트레이 b. 비블캡트레이 c. 발브카프트레이 d. 터보그리드트레이 6. (황화수소에 대한 내식성 재료) a. 304L형 스텐레스강 b. 316형 스텐레스강 7. (수소성분이 없는 재료) a. 300번 일형스텐레스강을 포함 8. (충전물) 충전탑에 충전하는 물체를 말함 9. (화학적으로 젖는 성질을 개선하는 처리) 산화피막을 형성시키는 처리를 포함 10. ('중수소 혹은 중수소화합물의 제조용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에 이용될 수 있는 암모니아 합성장치) 질소와 수소의 합성가스를 암모니아·수소고압교환탑에서 추출하여 합성암모니아로서 다시 교환탑에 되돌아오도록 구성된 것을 말함 11. (기밀한 구조) 밀봉구조를 포함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중수소 혹은 중수소화합물의 제조용의 장치 또는 그 부분품 혹은 부속품에 한함 (따라서 2(10)(나)는 전략물자 아님)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주) 포괄허가에서 2(10)(가) 품목은 전지역에 불가.

미국

(1A45B) 특수 패킹 [NSG Part 2 4.1. 대응]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리

GLV: \$1000

GCT: No

GFW: No

(참고) (2A53B) 액체금속 이동을 위한 펌프 [NSG Part 2.3.11, 2.4.2와의 대응어부 확인]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달리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5.1. Flash 엑스-레이 장비

일본

2(37) 전자가속기, 플레시방전형의 X선 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전자가속기) 전자를 가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전자현미경의 부분품) 전자현미경용으로 전용설계된 전자가속기를 말한다. 3. (빔의 펄스의 지속시간) 마이크로파 변조기로부터 발하는 1개의 펄스로부터 발생하는 집균빔 지속시간을 말한다. 4. (1,700에 메가전자볼트로....) (정의 생략) 5. (1,700에 메가전자볼트로.... 1마이크로초간에 가속할 수 있는) (정의 생략) 6. (크론으로 표시한.... 전하량의 최대치) 빔의 펄스의 지속시간이 1마이크로초를 넘는 경우에 그 중 임의의 1 마이크로초내에 가속된 전자의 전하량의 최대치를 말함. 7. (선두출력) 볼트의 단위로 표시한 선두전압에 암페어의 단위로 표시한 빔펄스의 지속시간내에 있어서 집균빔 전류의 평균치를 곱한 값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발표제1의 7항 (8)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2A54B) 전자 가속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달러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5.2. 다단계 light 가스 gun/고속 gun

일본

2(38) 발사체를 이용한 충격시험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충격시험기) 발사체의 가속방식이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a. 라이드가스방식 b. 코일방식 c. 전자방식 d. 전기·열방식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1의 7항 (8)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A54B) 다단계 light 가스 gun/고속 gun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5.3. 기계식 회전 거울 카메라

일본

2(39) 기계식, 전자식의 스트리크카메라, 플래밍 카메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회전반사경을 포함한 것) 반사경으로서 플리즘(다면체)을 이용한 것 포함
2. (화물들 성령 제 1조 44호 '가'중의 부분품) 동기전자장치 또는 회전반사경의 조립품 (터빈, 경,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 3. (화물들 성령 제 1조 44호 '가'중의 부분품)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 4. (전자식 플래밍 카메라) 고체촬영소자 또는 전자관에 의한 셔터의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포함 5. (이미지증강관으로 도전재료로 피복한 광전음극을 가진 것) (상세설명) 6. (이미지증강관으로 도전재료로 피복한 광전음극을 가진 것) 인버터형의 이미지증강관을 제외 7. (SIT관으로 셔터의 기능을 가진 것) 실리콘증강타겟 (실리콘다이오드 아레이타겟 등)을 이용하여 그 전자충격증배효과를 이용한 이미지형 촬상관으로 타겟의 전단(이미지부)으로 게이트를 분입으로써 셔터동작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카셀 또는 포켓셀을 사용한 전기제동셔터) a. 카셀을 사용한 전기제동셔터란 카의 효과 (굴절률이 전계의 2곱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전기 광학 효과)를 표시한 유전성액체를 넣은 유리셀 또는 강수전체결정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광의 강함을 변조하는 셔터를 말한다. b. 포켓셀을 사용한 전기제동셔터란 포켓셀효과(굴절률이 전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전기광학효과)를 표시한 결정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광의 강함을 변조하는 셔터를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1의 10항 (4) 또는 12항의 (4)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6A43B) ECCN 6A03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카메라 및 부품 [a.]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달러

GLV: \$1,500

GCT: No

GFW: No

NSG Part 2 -- 5.4. Elcetric streak and framing camera 및 튜브

일본

2(39) 기계식, 전자식의 스트리크카메라, 플래밍 카메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회전반사경을 포함한 것) 반사경으로서 플리즘(다면체)을 이용한 것 포함
2. (화물들 성령 제 1조 44호 '가'중의 부분품) 동기전자장치 또는 회전반사경의 조립품 (터빈, 경,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 것)을 포함 3. (화물들 성령 제 1조 44호 '가'중의 부분품)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 4. (전자식 플래밍 카메라) 고체촬영소자 또는 전자관에 의한 셔터의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포함 5. (이미지증강관으로 도전체료로 피복한 광전음극을 가진 것) (상세설명) 6. (이미지증강관으로 도전체료로 피복한 광전음극을 가진 것) 인버터형의 이미지증강관을 제외 7. (SIT관으로 셔터의 기능을 가진 것) 실리콘증강타겟 (실리콘다이오드 아레이타겟 등)을 이용하여 그 전자충격증배효과를 이용한 이미지형 활상관으로 타겟의 전단(이미지부)으로 게이트를 붙임으로써 셔터동작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카셀 또는 포켓셀을 사용한 전기제동셔터) a. 카셀을 사용한 전기제동셔터란 카의 효과 (굴절률이 전계의 2곱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전기 광학 효과)를 표시한 유전성액체를 넣은 유리셀 또는 강수전체결정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광의 강함을 번조하는 셔터를 말한다. b. 포켓셀을 사용한 전기제동셔터란 포켓스효과(굴절률이 전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전기광학효과)를 표시한 결정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광의 강함을 번조하는 셔터를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I의 10항 (4) 또는 12항의 (4)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6A43B) ECCN 6A03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카메라 및 부품 [b.]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달리

GLV: \$1,500

GCT: No

GFW: No

NSG Part 2 -- 5.5. 유체역학 실험을 위한 특수 기구

일본

2(40) 유체속도측정용의 간섭계, 망가닌이온압력측정기, 수정압전형압력센서를 이용한 압력교환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간섭계)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a. 레이저드프라 간섭계
b. 반사시스템을 이용한 속도간섭계 c. 2광선 간섭계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NSG Part 2 -- 6.1. 뇌관 및 multipoint initiation 시스템

일본

미국

(3A49B) 뇌관 및 multipoint initiation 시스템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6.2. Firing set을 위한 전자부품

6.2.1. 스위치 장치

6.2.2. 축전기

일본

2(41) 냉음극관, 트리거스파크, 펄프용콘덴서, 펄스발생기 [너관용, 고속] 등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냉음극관) 가스크라이트론관 및 진공스피리트론관을 포함 2. (양극지연시간) 출력신호의 입력신호에 대해 지연되는 시간을 말한다. 3. (트리거스파크간격) 방전관의 일종으로 방전은 2개의 전극사이에서 행해져 전극사이에 있는 별도의 보조전극에 印加한 트리거신호에 의해 방전을 개시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4. (턴온시간) On과 off의 두가지 상태를 가진 스위칭회로에서 오프상태부터 온상태로 변화시키는 입력한 후 부상태가 온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펄스용콘덴서) 주로 펄스전류 또는 펄스전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덴서 중 충전된 충전에너지를 펄스적으로 방전하는 기능을 가진 콘덴서를 말한다. 6. (직렬인덕턴스) 일본공업규격 CS102 혹은 IEC1071-1에서 규정된 측정방법 또는 이들에 준하는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말한다. 7. (화물등 성령 1조 50호중 모듈방식) 휴대용, 이동용 또는 건설화가 필요한 용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방진설계된 것을 말한다. 8. (모듈방식의 펄스발생기 또는 키세논선광램프의 발광장치) 기폭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펄스발생시간) 저항 부하상태에서 진폭이 10%로부터 90%가 되기까지의 시간간격을 말한다. 다만, 화물성령제1조제50호(가)에서 진폭은 전류의 진폭을 말하며, 화물성령제1조제50호(나)의 진폭은 전압의 진폭을 말한다.

진략물자: 표기

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1의 7항 (7)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3A43B) 스위치 장치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3A41E) 3A01.e.2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축전기

유효허가: SZ, 핵민감국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6.3. Firing set/동등한 고전류 펄스발생기(통제되는 뇌관을 위한 것)

일본

2(41) 냉음극관, 트리거스파크, 펄프용콘덴서, 펄스발생기 [뇌관용, 고속] 등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냉음극관) 가스크라이트론관 및 진공스피리트론관을 포함 2. (양극지연시간) 출력신호의 입력신호에 대해 지연되는 시간을 말한다. 3. (트리거스파크간격) 방전관의 일종으로 방전은 2개의 전극사이에서 행해져 전극사이에 있는 별도의 보조전극에 印加한 트리거신호에 의해 방전을 개시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4. (턴온시간) On과 off의 두가지 상태를 가진 스위칭회로에서 오프상태부터 온상태로 변화시키는 입력한 후 부상태가 온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펄스용콘덴서) 주로 펄스전류 또는 펄스전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덴서중 충전된 충전에너지를 펄스적으로 방전하는 기능을 가진 콘덴서를 말한다. 6. (시릴린터턴스) 일본공업규격 C5102 혹은 IEC1071-1에서 규정된 측정방법 또는 이들에 준하는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말한다. 7. (화물동 성령 1조 50호중 모듈방식) 휴대용, 이동용 또는 건설화가 필요한 용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방전설계된 것을 말한다. 8. (모듈방식의 펄스발생기 또는 키세논선광램프의 발광장치) 기폭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펄스발생시간) 지향 부하상태에서 진폭이 10%로부터 90%가 되기까지의 시간간격을 말한다. 다만, 화물성령제1조제50호 (가)에서 진폭은 전류의 진폭을 말하며, 화물성령제1조제50호 (나)의 진폭은 전압의 진폭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평별표제1의 7항 (7)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3A46B) Firing set 및 고전류 펄스발생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Redacted]

NSG Part 2 -- 6.4. 핵무기에 상당하는 고풍발물

일본

미국

(international munirion list에 포함됨)

NSG Part 2 -- 7.1. 오실로스코프

일본

2(42) 오실로스코프, 파형기억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번제금액: 없음

해석: 1. (샘플링 오실로스코프) 아날로그방식의 것 또는 디지털기억장치기능을 가진 것 포함 2. (프로그래밍유닛) 기기의 측정 혹은 공급가능한 범위 또는 기구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기구의 플러그와 소켓 등을 사용하여 결합할 수 있고 또한 떼어낼 수 있는 모듈, 조립품 또는 장치를 말한다. 3. (프로그래밍유닛)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은 제외 4. (증폭기) 외부증폭기, 전치증폭기 포함 5. (증폭기)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은 제외 6. (샘플링용의 소자 혹은 조립품) 샘플링헤드를 포함 7. (샘플링용의 소자 혹은 조립품)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은 제외 8. (아날로그방식의 오실로스코프) 플러그인방식 또는 모듈방식의 것을 포함 9. (대역폭) 증폭기에의 입력진압을 일정하게 측정할 때 음극선관상의 진동이 최대치의 70.7%이상인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10. (음극선관)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은 제외 11. (파형기억장치) 트랜젠트레코더, 파형디지털타이저를 말한다. 12. (1나노초미만의 간격으로 샘플링을 한다) 샘플링레이트가 1초당 1기가샘플을 넘는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링별표제1의 7항 (1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3A52E) Cathode ray oscilloscopes

유효허가: SZ, 다만, 핵민감국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7.2. 광전증배관

일본

2(43) 광전자증배관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광전음극) 적외, 자외의 영역을 포함한 광선의 조사에 의해 전자를 방출하는 재료로 구성된 음극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6A44B) 광전증배관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7.3. 펄스 발생기 (고속)

일본

2(41) 냉음극관, 트리거스파크, 펄프용콘덴서, 펄스발생기 [뇌관용, 고속] 등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냉음극관) 가스크라이트론관 및 진공스피리트론관을 포함 2. (양극지연시간) 출력신호의 입력신호에 대해 지연되는 시간을 말한다. 3. (트리거스파크간격) 방전관의 일종으로 방전은 2개의 전극사이에서 행해져 전극사이에 있는 별도의 보조전극에 印加한 트리거신호에 의해 방전을 개시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4. (턴온시간) On과 off의 두가지 상태를 가진 스위칭회로에서 오프상태부터 온상태로 변화시키는 입력한 후 부상태가 온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펄스용 콘덴서) 주로 펄스전류 또는 펄스전압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덴서 중 충전된 충전에너지를 펄스적으로 방전하는 기능을 가진 콘덴서를 말한다. 6. (직렬인덕턴스) 일본공업규격 C5102 혹은 IEC1071-1에서 규정된 측정방법 또는 이들에 준하는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말한다. 7. (화물등 성령 1조 50호중 모듈방식) 휴대용, 이동용 또는 견실화가 필요한 용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방전설계된 것을 말한다. 8. (모듈방식의 펄스발생기 또는 키세논선광램프의 발광장치) 기폭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펄스발생시간) 지향 부하상태에서 진폭이 10%로부터 90%가 되기까지의 시간간격을 말한다. 다만, 화물성령제1조제50호 (가)에서 진폭은 전류의 진폭을 말하며, 화물성령제1조제50호 (나)의 진폭은 전압의 진폭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령별표제1의 7항 (7)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3A44B) 고속펄스발생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8.1. 중성자 발생기 시스템

일본

2(44) 정전가속의 중성자발생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2A19A) 국제원자력리스트 [b. 중성자발생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개, 부품 및 부착물은 달리

GLV: \$0

GCT: No

GFW: No

NSG Part 2 -- 8.2. 일반 원자력 관련 장비

8.2.1. 원격 조작기

일본

2(45) 원격조작 매니플레이터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방사선을 차단하는 벽으로 격리시켜 조작할 수 있는 것) 방사선을 차단하는 벽으로 격리된 조작자의 동작에 따라 동작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A50B)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 장비 [h. 원격조작기]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리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8.2. 일반 원자력 관련 장비
8.2.2. 방사선차폐창

일본

2(46) 방사선차폐창, 창틀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1. (창) 창틀에 넣은 것에 관해서는 창틀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A50B)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 장비 [e. 방사선차폐창]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8.2. 일반 원자력 관련 장비

8.2.3. 방사선 경화 TV 카메라 (Radiation-hardened TV cameras)

일본

2(47) 내방사선텔레비카메라, 렌즈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해석의 특이사항: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미국

(2A50B)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 장비 [f. radiation-hardened TV cameras]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달러

GLV: No

GCT: No

GFW: No

NSG Part 2 -- 8.3. 트리튬, 그 합성물, 및 혼합물

일본

2(48) 트리튬, 트리튬화합물, 트리튬혼합물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해석의 특이사항: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없음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포함)

NSG Part 2 -- 8.4. 트리튬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부분품

일본

2(49) 트리튬의 제조, 회수, 저장용의 장치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트리튬의 제조용, 회수용 또는 저장용의 장치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포함)

NSG Part 2 -- 8.5. 백금촉매

일본

2(50) 트리튬의 회수용, 중수제조용의 백금을 이용한 매체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령별표제1의 2항 (50)에 계기된 촉매로 소수성이 있는 것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미국

(1C19A) 국제원자력리스트 [e. wet-proofed platinized catalysts]

유효허가: QSTVWYZ

단위: 킬로그램

GLV: \$3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8.6. 3가 헬륨 (Helium-3)

일본

2(51) 헬륨3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없음

전략물자 특이사항:

1종 일반포괄허가: A, B, D, F, G, H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E, I, J, L,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5B) 헬륨

유효허가: QSTVWYZ

단위: 리터

GLV: \$5000

GCT: No

GFW: No

NSG Part 2 -- 8.7.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 (Alpha-emitting radionuclides)

일본

2(19) 핵병기 기폭용 알파선원이 되는 물질등 [비스무트, 라듐 226, 알파방출 방사성 핵종]

허가대상지역: 전지역

면제금액: 없음

해석: 표기없음

전략물자: 표기

전략물자 특이사항: 1. 넵튬, 아메리슘, 큐리움, 카리홀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 혹은 혼합물에 한함.

1종 일반포괄허가: A, B 지역

2종 일반포괄허가: 없음

특정포괄허가: C, D, E, F, G, I, J, M 지역

기타: 성분표 (화학분석표) 첨부

미국

(1C54B)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 화합물, 혼합물 (원자번호 3에서 83은 제외)

유효허가: QSTVWYZ

단위: "MC"

GLV: \$500

GCT: No

GFW: No

(편집자주) 이 범주는 일본에서 정의한 넵튬 (원자번호 93), 아메리슘 (원자번호 95), 큐리움 (원자번호 96), 카리홀늄 (원자번호 98)을 포함

참고문헌

1. Export Management System Guidelines, 1994, DOC.
2. Export Management System: Summary of the Guideline, 1994, DOC.
3. Internal Control Program Guidelines, 1991, DOC.
4. NRC 수출허가 Flow Chart, 1994, DOS.
5. NSG Part 1 Guideline, April 1994, IAEA.
6.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s and Japan's National Controls, 1994, MITI.
7. The New Export Administration, Oct. 1994, DOC.
8. The Outline of Export Licensing Procedures and Review in Japan, 1994, MITI.
9. The Outline of Japan's Security Export Controls, 1994, MITI.
10.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U.S. Department of Commerce, February 1993.
11.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NSG Part 2 이중사용 품목 리스트, 1995, DOS.
12. 수출무역관리령-별표제1 항목별대비표, 1994,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13. 안전보장무역관리관련 화물·기술 및 관계 법령집, 1994, MITI.

부록

미국 상무부의 국가군 분류

(자료원: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 1993)

Country Groups

For export control purpos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separates countries into seven country groups designated by the symbols "Q, S, T, V, W, Y, Z." Listed below are the countries included in each group. Canada is not included in any country group and is always referred to by name.

Country Group Q

Romania

Country Group S

Libya

Country Group T

North America

Greenland
Grenada
Mexico
(including Cozumel & Revilla Gigedo)
Miquelon and St. Pierre Islands

Central America & Caribbean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French West Indies
Guatemala
*Haiti
(including Gonave & Tortuga Islands)
Honduras
(including Bahia & Swan Islands)
Jamaica
Leeward & Windward Islands
Netherlands Antilles
Nicaragua
Panama
Trinidad & Tobago

South America

Anguilla
Argentina
Bolivia

Brazil
Cayman Islands
Chile
Colombia
Ecuador(including the Galapagos Islands)
Falkland Islands (Islas Malvinas)
French Guiana (including Inini)
Guadeloupe
Guyana
Martinique
Montserrat
Paraguay
Peru
Saint Kitts-Nevis
Saint Lucia
San Vincent & the Grenadines
Surinam
Turks and Caicos Islands
Uruguay
Venezuela

Country Group V

Afghanistan
Andorra
Angola
Ashmore and Cartier Islands
Australia
Austria
Bahrain
Bangladesh
Belgium
Benin
Bhutan
Bouvet Island
Botswana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runei
Burkina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na, People's Republic of
 Christmas Island
 Cocos Island
 Cook Islands
 Coral Sea Islands Territory
 Comoros
 Congo, People's Republic of the
 Cyprus
 Denmark
 Djibouti, Republic of
 Dominica
 Egypt
 Equatorial Guinea
 Ethiopia
 Faroe Islands
 Fiji
 Finland
 France
 French Polynesia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Gabon
 Gambia
 Germany
 Ghana
 Gibraltar
 Greece
 Guernsey
 Guinea
 Guinea-Bissau
 Heard Island and McDonald Islands
 Hong Kong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q
 *Iran
 Ireland
 Israel
 Italy
 Ivory Coast
 Jan Mayen
 Japan
 Jersey
 Jordan
 Kenya
 Kiribati
 Korea, Republic of
 Kuwait
 Lebanon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uxembourg
 Macau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n, Isle of
 Mauritania
 Mauritius
 Monaco
 Morocco
 Mozambique
 Myanmar (Burma)
 Namibia
 Nauru
 Nepal
 Netherlands
 New Caledonia
 New Zealand
 Niue
 Nigeria
 Norfolk Island
 Norway
 Oman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itcairn Islands
 Portugal
 Qatar
 Reunion
 Rwanda
 Saint Helena
 San Marino
 Sao Tome & Principe, Democratic Republic of
 Saudi Arabia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 Republic of
 Spain
 Sri Lanka
 Sudan
 Svalbard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
 Taiwan
 Tanzania
 Thailand
 Togo
 Tokelau
 Tonga

Tunisia
Turkey
Tuvalu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Vanuatu
Vatican City
Wallis & Futuna
Western Sahara
Western Samoa
Yemen
Yugoslavia (See Below)
*Serbia
*Montenegro
Slovenia
Croatia
Bosnia-Herzegovina
Zaire
Zambia
Zimbabwe

Country Group W

Czech Republic
Poland
Slovak Republic

Country Group Y

Albania
Bulgaria
Cambodia
Estonia
Laos
Latvia
Lithuania
Mongolian People's Republic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Includes
all geographic areas formerly part of the
USSR)

Country Group Z

Cuba
North Korea
Vietnam

서 지 정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522/95					
제목/부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통제품목에 대한 미국·일본의 수출 허가 요건 분석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오근배, 대외정책연구실				
연구자 및 부서명	최영록, 대외정책연구실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일	1995. 6
페이지	107페이지	도표	유(○), 무()	크기	26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대외비()	급비밀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 록 (300단어 내외)	<p>우리나라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하나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가입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SG의 자취 및 통제품목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공급국(NSG) 지침을 자국의 제도에 반영하는 방법과 통제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요건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p> <p>분석에 사용된 미국의 자료에는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 NRC의 10 CFR 110, 에너지부의 10 CFR 810이 있으며, 일본의 자료에는 수출관리령 및 다수의 통달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이 통제하는 NSG 품목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품목에 대해, 허가요건을 목적지, 허가종류, 제출서류 등의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허가요건을 각각의 품목에 대해 비교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구축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p>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이내)					
원자력 수출통제,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수출허가, 미국, 일본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522/95						
Title/Subtitle		An Analysis on the Export License Criteria for NSG Control Items in the US and Japan				
Project Manager and Dept.		Keun-Bae Oh, Nuclear Foreign Policy Dept.				
Researcher and Dept.		Youngrok Choi, Nuclear Foreign Policy Dept.				
Pub.Place	Daejeon	Pub.Org.	KAERI	Pub.Date	1995. 6	
Page	107page	Ill. and Tab.		Yes(O), No()	Size	26 cm
Note						
Classified	Open(O),Outside(),Class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p>Korea has taken steps to join the Nuclear Suppliers Group (NSG) which is a major part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 In this connection, it is an urgent task to build a new Korean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that includes NSG guidelines and control ite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veloped supplier countries' experience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p> <p>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US and Japan have controlled the items listed in NSG Part 1 and 2 guidelines. To this end, various relevant regulations of the US and Japan were studied. Among those regulations, the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US 10 CFR 110 and 810, and the Japan's Export Administration Order are included. Through the review process, this study identified NSG items which are controlled in the export control systems of the U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summarized and compared the export license criteria that must be satisfied before exporting each NSG item in the two countries. The export license criteria consist of permitted destinations, document requirements, and types of license.</p> <p>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appropriate Korean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 and could be used as references to the practical export licensing policies of the US and Japan.</p>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Nuclear Export Control, NSG, Export License, United States, Japan				